

증인신문 등 충실한 증거조사가 탄핵심판 성공 가른다

헌재 '탄핵심판 심리' 본격화

대통령 직접 신문 회박 ... 주변인물·기업총수 소환 전담 재판관 지명 전망 ... 사실상 '전원투입' 총력전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충실한 증거조사 절차 여부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헌재가 꼭 이 수사에 얽매어 일정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다.

탄핵심판 증거조사 절차에는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가 포함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과 협의해 피청구인 대통령의 신문을 헌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론기일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우선 박 대통령 수사가 공범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소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최소한 10명 이상 증인, 차은택 등 구속기소된 대통령의 공범은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재단 모금 등에 관련된 기업 총수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산적인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헌재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품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대통령과 법사위원장도 양측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신문기사와 대통령 연설문, 국회 속기록, 측근비리 내사 종결 요지 자료 등 문서로 된 증거자료만 4박스 분량이 제출됐다. 기자회견이나 각종 연설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취록 등도 제출됐다.

자료를 제출했다더라도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

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사실 조화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려면 수사나 재판 자료가 필수적인 만큼 헌재가 법원과 특검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은 판사 출신 중 선임 재판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증거조사가 형사재판 방식을 준용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절차인 점, 엄격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점 등에서 일차적으로 형사소송 법리를 적용한다.

증거조사를 담당할 실무인력은 별도 총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재조정해 운용한다. 전담 TF를 가동하지만, 탄핵심판 외 심판의 심리가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소속 헌법연구관 80여명 대부분이 투입되는 총력 체제로 갈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구성 및 현황

| 출신학교 | 서기석 (63) | 안창호 (68) | 이진성 (60) | 이정미 (54) | 박한철 소장 (63) | 김이수 (63) | 김창중 (59) | 강일원 (67) | 조용호 (61) |
|--------|-------------|-------------|-------------|-------------|-------------|-------------|-------------|-------------|-------------|
| 출신학교 | 경남고, 서울대 | 대전고, 서울대 | 경기고, 서울대 | 마산고, 고려대 | 체물고, 서울대 | 전남고, 서울대 | 영신고, 경북대 | 용신고, 서울대 | 중앙고, 건국대 |
| 전직 | 서울중앙지법법정장 | 서울고검장 | 광주고법장 | 대전고법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법장 | 사법연수원장 | 대구지법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장 |
| 연수원 기수 | 11기 | 14기 | 10기 | 16기 | 13기 | 9기 | 12기 | 14기 | 10기 |
| 지명주체 | 박근혜 대통령 | 새누리당 | 양승태 대법원장 | 이명박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민중총합당 | 양승태 대법원장 | 여야 합의 | 박근혜 대통령 |
| 임기 | 2019. 4. 14 | 2018. 9. 19 | 2018. 9. 19 | 2017. 3. 13 | 2017. 1. 31 | 2018. 9. 19 | 2018. 9. 19 | 2018. 9. 19 | 2019. 4. 14 |
| 성향 | 보수 | 보수 | 보수 | 진보 | 보수 | 진보 | 보수 | 중도 | 보수 |

“사건 중요성 잘 알아 ... 옳은 결론 빨리 내릴 것”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판사 출신 ... 정무적 감각 탁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명된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은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헌재는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명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여당이나 야당 몫이 아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

법정책임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2014년 12월부터 법사위원 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다.

180일 이내 결정 ... 빠르면 3월 중순 예상

결정서에 심판 관여한 재판관 의견 모두 표시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구두변론 원칙...형사소송법 준용

대통령 스스로 사임편 의견 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따라서 심판 절차나 증거조사 등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법은 당사자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다시 잡도록 한다. 하지만 사실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고 출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변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고 변론은 구두변론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 장소는 헌재 내 심판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재소장의 결정으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헌재 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자격을 잃으면 새로운 법사위원장이 사건을 인계 받을 때까지 심판 절차가 중단된다. 이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이 미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심판을 수행하게 했다면 중단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헌재의 결론은 둘 중의 하나다. 변론과 증거조사를 마치면 헌재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선고 과정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하다.

탄핵심판 대상이 선고 전에 파면된 경우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전체 탄핵심판 대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사실상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이를 파면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대통령은 탄핵 이외에는 파면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사임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는 의견과 ‘사임과 파면은 법적 성질이나 효과가 다르므로 양자를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결정서에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을 모두 표시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별다른 법 규정이 없었지만 2005년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개개 재판관의 의견을 모두 결정서에 표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안보 최우선 ... 경제·민생 챙기기 행보

황 권한대행 ... ‘여야정 협의체’ 구성 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경제와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오후 7시 직후부터 국정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방·외교·행정부 장관 긴급자시, 임시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 합동참모본부 방문 등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시급한 국정 안정과 협업체계 구축은

어느 정도 갖춰짐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업이 과제로 부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2시 합동참모본부 방문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전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우리 군의 확고한 경제·대미 태세를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청사에서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헌재까지 금융·외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의 특이 동향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모든 공직자들은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경제와 민생,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면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청와대와 총리실간 업무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실장은 황 권한대행을 찾아가 청와대 비서실이 앞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업무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청와대 비서실은 황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성공투자전략!

흥동스러운 경제상황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등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과 분석

개발은 넘쳐나는데..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은 어디일까?

토지시장에 대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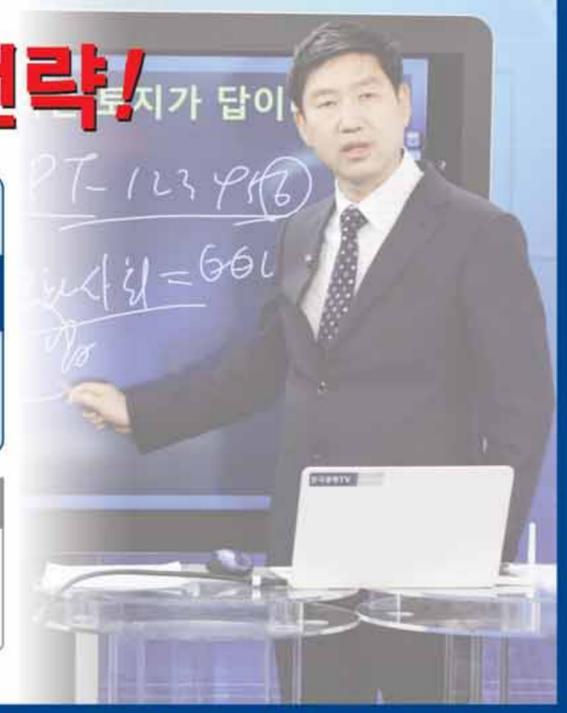
미래가치가 높은 신개발지를 찾아라!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행복한 부동산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하이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2시(재방))

투지가 답이



강의내용

- ✓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
-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 수도권 및 지방의 최고 노른자위를 찾아라!
- ✓ 개발지에서 성공투자하는 법!
- ✓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12월 14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 595-4236, 4237